

#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인권포럼**

국회인권포럼은 국민기본권 신장과, 인권침해사례의 조사 및 제도개선 사업, 국내외 인권관련단체와 연대·협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 국회의원 황우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전화 : (02)788-2017, 팩스 : 788-3623

E-mail : hwangwy@chollian.net

일 시 : 2000년 7월 7일 (금요일) 14:0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후 원 :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주 최 : 국회인권포럼 (T.788-2017, F.788-3623)

주 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T.747-6381, F.747-6382)

##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00년 7월 7일 (금요일) 14:0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후 원 :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주 최 : 국회인권포럼 (T.788-2017, F.788-3623)  
주 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T.747-6381, F.747-6382)

## 인사말

국회인권포럼 대표 국회의원 황우여

안녕하십니까? 황우여의원입니다.

16대 국회에서 처음 갖게 되는 국회인권포럼 정책심포지움에 관심가져 주시고 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인권포럼은 15대 국회에서 인권문제에 뜻있는 의원님들에 의해 만들어져 그동안 인권 사각시대의 현장목소리를 수렴하고 국회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새롭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사회와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에 이미 상당수 들어와 있고 여러가지 인권문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주제로 연구·토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정책 담당부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연구해 온 훌륭한 의견을 발표하시고 토론하셔서 정책반영에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침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열려 정책반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인권포럼에서는 토론내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뜻있는 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열린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노력을 기울여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치하를 드리며,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례 발표

## 이주노동자 사례발표 자료

미얀마노동자 칸

### 1.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와 노동현실

대학을 휴학 중이던 본인은 1994년에 한국의 회사에 연수생으로 가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떨 뜻이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1994년 7월 7일에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김포에 있는 세우폴리마(가구공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3달 반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한달 급여는 임금수당을 포함하여 15만원이였고, 처음 한달 동안은 그곳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시간이 늘어가고 생각했던 일에 대한 공부는 할 수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일과 중에 육설을 하는 등 회사에서의 대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일요일날 나갈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고, 만약에 회사에서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간섭은 심해지고 꼭 철장안에 갇혀있는

동물처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1994년 10월에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연수지 이탈이후 친구의 소개로 남동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한달 급여는 60만원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일을 하였고 일은 힘이 들었지만 주위의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1994년 12월 20일에 부도가 나게 되었고 본인과 친구는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본인은 법적으로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월급을 포기한 채 남동공단의 다른 회사에 입

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월급은 53만원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잔업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공장안이 너무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저는 남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 계속적으로 잔업을 하라고 하여서 일이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안좋아 잔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로도 일산과 남동공단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가 7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면 일한 만큼 돈도 벌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는 것과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월급이 적게 책정이 되고 생산량이 더 많아도 한국 사람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곧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초보외국인인 경우는 대화도 잘 안되고 말도 잘 이해 못하므로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엔 한국인보다 적은 임금 등의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려 6개월 정도가 되면 일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외국인이 하는 일은 단순노동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적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사람들과 잘 지내어서 한국 문화와 사람들과의 정을 키우고 싶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저의 의견을 제안한다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현지 나라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 선생님들에게 6개월 동안 일에 대한 훈련과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교육을 시킨 다음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능력과 한국말 능력 Test를 만들어 Test결과를 가지고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 한국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이 숙련이 되면 그 일에 대한 자격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받아 한국에 있는 어느 공장에 가도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나중에 미얀마에 가서도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

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유럽이나 미국인에게 대하는 태도와 우리 동남아시아인에게 대하는 태도의 차별을 많이 느끼면서 저 또한 아쉬움이 컼습니다. 동남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미국인, 한국인 모두가 붉은 피가 흐르는 같은 사람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며 글로벌 시대가 될 것이므로 이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차별하기보다는 서로가 뭉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글로벌 시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외국인 산업연수생 경험 사례

필리핀 노동자 프란시스코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 필리핀에서의 일주일간의 연수기간을 기억합니다. 한글을 읽고 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수료증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P2,000(W56,000)를 지불했고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필리핀의 World net에 또다른 비용P70,000(W1,960,000)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34살된 필리핀인 프란치스코 드페오 주니어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12일, 2년 계약의 산업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장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탈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과 여흥시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건강검진도 이루어졌습니다. 사흘간의 교육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바로 경남의 한 공장으로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월 7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드릴기계에 의한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고 사장님에 의해 함안의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은 X-ray도 찍지 않았고 단지 깊이 찢어지는 상처일 뿐이라며 며칠 쉬면 좋아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계속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원손만으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만인 3월 15일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업체에 전화를 했고 그들은 공장으로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회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고 후 2주일이 지나고 사장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월 20일 이었는데 그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엄지손가락의 반창고를 떼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는 알고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은 더욱 냉정하게 대했고 자주 저를 위한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했고 사후관리업체의 처리를 기다리기에 지친 저는 15일분의 임금과 적금을 남겨두고 이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 필리핀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지난 두 달 동안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를 아무공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러나 저는 계속 일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입국 때 진 빚을 갚기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검진결과 부러진 손가락뼈를 붙이는 수술 필요. 단지 걸 상처만 꿰멘 상태임)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조발제

## 노동허가제 도입의 방향

박석운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노동인권회관 소장)

抵牾 조항

### 1.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의 문제점

#### 가. 한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분포

한국내의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법적 신분에 따라 등록 외국인(이주)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의 각 분류별 추정숫자 및 그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합법취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합계
		해외투자기 업 연수생	중소기협 연수생	소계		
94.7.31 현재	4,321 (6.0%)	-	-	13,378 (18.6%)	54,187 (75.4%)	71,886 (100.0%)
94.12.31. 현재	5,265 (6.4%)	9,874 (12.01%)	18,816 (22.89%)	28,690 (34.9%)	48,231 (58.68%)	82,186 (100.0%)
95.7.31. 현재	6,475 (6.29%)	-	-	34,931 (33.95%)	61,472 (59.75%)	102,878 (100.0%)
95.12.31. 현재	8,228 (5.77%)	15,238 (10.7%)	37,073 (26.03%)	52,311 (36.73%)	81,866 (57.48%)	142,405 (100.0%)
96.8.31. 현재	11,627 (6.34%)	19,703 (10.75%)	41,106 (22.43%)	60,809 (33.19%)	110,751 (60.45%)	183,187 (100.0%)
96.12.31. 현재	13,420 (6.37%)	-	-	68,020 (32.31%)	129,054 (61.31%)	210,494 (100.0%)
97.4.30. 현재	16,438 (7.1%)	23,526 (10.2%)	57,359 (24.8%)	80,915 (35.0%)	134,030 (57.9%)	231,383 (100.0%)

97.12.31	15,900 (6.5%)	32,656 (13.3%)	48,795 (19.9%)	81,451 (33.2%)	148,048 (60.3%)	245,399 (100.0%)
98.12.31.	11,143 (7.1%)	15,939 (10.1%)	31,073 (19.7%)	47,012 (29.8%)	99,537 (63.1%)	157,689 (100.0%)
99.12.31.	12,592 (5.8%)	20,017 (9.2%)	49,437 (22.7%)	69,454 (31.9%)	135,338 (62.3%)	217,384 (100.0%)
2000.5.말	14,697 (6.0%)	20,032 (8.2%)	54,755 (22.5%)	74,987 (30.7%)	153,879 (63.2%)	243,363 (100.0%)

자료

\*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중소기협중앙회.

통계를 보면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이 97년말 24만5천명까지 증가했다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급감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숫자가 2000년 5월에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단 종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그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의 문제점

##### 1) 편법에 불법에 안주하고 있는 외국인력정책

: 합법영역과 불법영역의 전도(顛倒)현상

현재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은 공식적인 외국인력도입을 “대체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순인력의 공식적인 도입은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 대신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단순인력은 산업연수와 연수취업제를 통해서 일부 조달하고 또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이주노동자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합법도입은 전체 외국인력 규모중 6%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외국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62-63%) “연수”라는 명목으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고(30-31%) 있는 것이어서 외국인력 정책이 전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영역에서 운용되는 것이 극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를 정상화켜 합법적인 영역에서 운용되게 만드는 일이 외국인력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여전히 편법적인 제도인 산업연수제나 연수취업제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국의 인력정책이 불법이나 편법적인 수단에 의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불감증에 걸려있으니 참으로 딱한 지경이다.

##### 2) 연수제도의 문제점

정부당국이나 관변학자들은 마치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한편으로는 외국인력의 대량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임금노동력을 대량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라도 된다는 듯이 주장하고 확대방안을 찾아 내었지만, 이는 편법일 뿐이고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필요하니까 편법으로(명목만 ‘연수’ 이지 실제로는 편법적 외국인노동력 도입)외국인력을 국내로 들여다가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경제에 필요 없게 되면 그때 가서 내보내면 될 것 같지만, 사태진행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선진각국에서 모두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더라도 산업기술연수제도나 그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취업체도 실패임이 이미 확인된셈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입국한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상태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사업기술연수생 이탈율〉

(단위 : 명)

구분	'94	'95	'96	'97	'98	'99	계
입국	18,819	21,082	25,919	20,092	10,547	30,354	126,813
이탈인원	13,733	10,957	11,481	6,132	2,355	6,012	50,670
이탈율(%)	73.0	52.0	44.3	30.5	22.3	19.8	37.5

당해기간이 입국자중 이탈발생자수/당해기간 입국자수

위 통계를 보면 IMF초기인 1998년에 이탈인원이 감소하였을 뿐이고 1999년부터는 이탈인원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98년, 99년 입국자들도 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해서 또 대거 불법체류 상태로 넘어 갈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연수생 이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에서 보고된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악명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특히 동남아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 국익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비유하자면 당장 눈앞의 저임금에 현혹되어 큰 국익을 놓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경제 및 세계화시대의 미래상을 그려볼 때 미·일 편중에서 동남아 각국과의 유대강화나 경제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른바 ‘친한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갖지 못하게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수취업제는 일본의 기능실습제를 본뜬 제도로 보인다. 최고 9개월까지의 기술연수 후 최고 15개월까지의 기능실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기능 실습 기간(9개월 지난 후)에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을 모두 적용시키고 있다. 기술연수기간중에는 편법적 작업투입을 방지하고 실질적 기술연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기술연수를 시키도록 제도화해 놓은 셈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연수취업제는 2년의 “연수”기간중에 한국도착직후 3일간의 안내 교육을 시킬 뿐이다. 이것을 기술연수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고, 대신 이른바 “연수기간”중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오로지 “노동”만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연수생”이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 사인(私人)간에 농담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만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무리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지만, 있어서는 안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또 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연수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연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연수생 도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중소기협중앙회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이 되겠지만, 실제로 일선의 중소기업주들의 이해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중소기업주들의 관심은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 더 우선적인 요구이다. 기업 주들은 만일 노동허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탈률이 매우 높은 산업기술연수제도보다 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도 중소기업주들의 요구운운하면서 연수제폐지를 반대하는 중기협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연수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노동허가(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 3) 불법체류자에 대한 금지와 강력단속방침은 부작용만 증폭시킨다.

반대로 법무부당국이 순진하게 생각하듯이 외국인력 도입을 종전대로 계속 금지시키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아무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원천봉쇄할 수가 없고,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각 사업장에 박혀 버리면 단속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또 단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음성화되어 폐단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4) 재외동포에 대한 우대도 득책이 아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일응 상대적으로 폐단이 적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재중국이나 재(구)소련의 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의 확대적용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통일시대 북한노동력의 등장과 연결해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하여 판단해야지, 졸속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같은 조건에서 재외동포만 우대하는 방식은 민족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현명한 방법이 아님이 지적되어야 한다. 2차대전전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강제로 끌고 갔다가 지금까지 50년이상 살고 있는 한국인, 중국인들을 차별하면서도 남미출신의 일본계 2.3세에게 특혜를 주는 일본식 혈통주의는 비열한 민족차별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우리 나라가 이런 일본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5) 외국인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은 불가역(不可逆)이다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이나 편법도입 모두 금물이다. 또한 금지와 강력단속방침도 성공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편법은 편법을 놓기 마련이며,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 도입보다 더욱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은

'연수'이지 '외국인노동력 도입'이 아니"라면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5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한국내에 노동자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런 상태를 애써 무시하고 머릿속이나 입으로만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가는 사회적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태를 뒤쫓아가기도 힘들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25만명 정도의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산업기술연수생들이 한국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우리의 정책논의를 원점에서 출발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간에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미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고 또 외국인노동자들 중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이 상황은 되돌려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현실적 대안모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편법이나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노력이 실천되어야 마땅하다.

## 2.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의 기본방향 정

### 가. 외국인력 도입시 문제점

#### 1) 기업의 저임금노동력 요구와 그 부작용

기업주 등 재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하니 저임금의 외국인 단순기능 노동력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우선 필요하니 저임금의 '노동력'만 쓰고 싶겠지만, 노동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도외시하고 저임금노동력만 한눈 팔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부

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 2)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문제점

첫째, 이미 IMF관리시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대량 실업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과 자동차 및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필요 노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견될 우려가 현존한다.

한편, 언젠가 닥쳐올 남북인력교류시대나 남북통일시대에 새로 노동시장에 등장할 풍부한 양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실업문제나 고용안정문제를 가벼이 보는것은 과열적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독일 통일후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

둘째, 값싼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국내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더욱 고착되고, 또한 국내노동시장의 질서가 엄청나게 교란될 위험이 현존한다.

셋째, 내국인노동자들의 노조조직력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값싼 외국인노동력의 범람은 내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향상을 발목 잡는 결정적 요인 될 것이고 분할통치를 통한 노동통제의 도구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단일민족사회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력의 대량 도입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공격적 민족주의의 폐해). 아울러 장기체류로 인한 결혼, 2세 출생, 2세 교육 문제, 의료문제 등이 속출할 것이고, 주거문제나 미비된 사회보장의 확산에도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국내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산업구조개선에도 방해가 되고, 국내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에서도 도리어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영세·중소기업들은 우선 입맛에 달콤한 저임금노동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산업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제성을 갖춰내는 것이 올바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그런데 저임금의 외국인노동력을 계속 공급해나가는 것은 영세·중소기업에 마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 3)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도입은 안된다.

결국 외국인력의 도입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무분별 도입은 곤란하다.

## 나. 외국인노동자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 1) 외국인력을 도입하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명목이 어떠하든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내국인노동자와 동등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의 동등수혜, 사업장 이동의 자유(사실상 강제노동의 금지), 모집과 송출과정의 공공성 보장(송출업체 횡포의 제도적 방지) 및 노조가입보장 등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편의주의는 성공하기도 어렵거나 국제화시대의 중장기적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만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다원주의적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일 이 정도의 필수적인 '대가'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상태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단물만 빼먹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알짜한 생각은 옳지 않은 정책일 뿐더러, 현실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없고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기존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즉,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적 신분부여가 외국인력도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대책기조를 세우고 대응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벌써 13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미등록상태에서 국내경제에 숨은 일꾼 노릇을 특특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력이 필요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이에 앞서 우리 경제에 필요하여 이미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우선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 몇년동안 이미 한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한국말로 어느 정도 알아듣고, 또 기술도 어느 정도 숙련되어 일하기 좋은 상태인 외국인들을 모두 내 보내고, 이제 와서 새로 연수취업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들여오면 언제 가르쳐서 지금 일하는 외국인들만큼 숙련시킬 것이며 또 계산하기 어려운 그 기간동안의 엄청난 낭비는 어떡하냐는 것이다.

결국 정부당국에서 탁상공론으로 불법체류자는 모두 내보내고 새로 저임금 연수생들을 들여오는 것이 좋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태도는 경제효율의 측면에서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필수적이다.

사실 취업연수생 문제만 보더라도 공개토론과정이나 국민적 합의형성과정을 일체 도외시한 채 몇몇 정책당국자들이 밀실에서 마치 사업주 단체에 이권 주듯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침해사례로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새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기조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외국인력정책수립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국민적 합의과정에서 또다른 측면에서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연후에 비로소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 3.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가칭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법"의 제정

### 가. 노동허가제의 도입

#### 1)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최근 외국인력정책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독일형의 노동허가제와 대만형의 고용허가노동허가제로 대별할 수 있다.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독일 국내에서는 독일정부, 사용자 단체, 노조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운영하며 독일의 노동법관련규정을 전면적용하면서 내외국인을 동등대우하는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도 가입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의 경우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제를,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취업 가능하도록 제도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92년 취업복무법 및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개정 또는 제정 공포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신청 이전에 반드시 국내근로자에 대한 구인광고를 내고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제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대만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국내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분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또한 외국인 출국과 사망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고용보증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단순·미숙련 노동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상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직종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른 고용패스제로 대체하여 제도운용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세를 부담시키고 외국인 고용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 2) 가칭 '외국인근로자보호법' 또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해야

우리 나라 현재의 제반 여건, 즉,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은 곤란하다는 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15만명이상의 미등록 외국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 산업기술연수생이 이미 7만5천명정도 도입되어 있다는 점 및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중장기적 국익에 비춰 볼 때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여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

서 가칭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법' 또는 '외국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1) 단기체류 위주 - 로테이션 정책의 성공 가능성 여부

중기협과 같이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는 사용자단체나 일부 사업주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노동력의 합법적, 제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 사용가능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및 취업기간의 제한('사용기간의 제한'이 아님)을 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고용의 제반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고, 근저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단기 체류시켜 근무시키다가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른바 '로테이션' 정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테이션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독일의 경우 우리 나라 출신 광부나 간호사들에게도 적용시켰듯이 처음에는 로테이션 정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취업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한다는 점과, 또 기업측에서도 새로 데려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비용, 여비 등의 부담이나 숙련도 저하 등의 이유로 로테이션을 피하고 장기채용하고자 하는 압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1973년 석유파동이후 모집정지정책, 1980년대의 귀국촉진정책과 동화·통합정책을 바꿔가며 시행하였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였고, 최근에는 공존정책으로 방향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장기체류위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되겠고 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체류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런 사태진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체류 후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로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하여 제도의 밀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고민에 대한 대안이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의 구분운용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 2) 외국인력정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현재는 외국인력정책은 정부관련부처끼리 모여 결정하는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단체에 이권을 나눠주듯이 실시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당사자인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정부와 외국인노동자관련 공익대표들도 함께 참여하여 정책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사·공익(노사정이 아님) 3자 구성되는 기구에서 전반적 정책결정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공익대표에는 정부 대표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비정부(NGO) 공익대표가 함께 참가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 3) 노동허가외에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병존 여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업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병존시키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만의 고용허가제도를 밑그림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그 이유는 고용허가제를 두게 되면 부적격 사용자를 배제할 수 있고, 외국인고용의 전제로서 여러 가지 절차·장치를 둘으로써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굳이 고용허가제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운용하면 당해 외국인노동자가 한국현지사정도 잘 모른 채 본국에서 계약하고 취업한 사업장에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측면이 너무 강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두지 않고, 당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노동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권 침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문제와 관련해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이동성을 완전 자유화시키는 것보다, 독일식으로 취업가능업종, 사업장규모 및 기간 등이 제한되는 일반노동허가와 이런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특별노동허가는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조약' 제52조의 기준대로 5년이상의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

해서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노동권 침해의 소지를 극소화시키면서도 또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매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인력송출기관 및 인력알선기관의 문제

현재는 사업주 단체인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외국 인력 도입 및 알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협중앙회와 연계된 현지 사업들이 인력모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지송출기관의 횡포를 균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에게 인력송출을 막겨서는 안되고 반드시 해당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무료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해야 하며, 수수료 등에 있어서도 노동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국가는 인력송출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모집광고할 때 표준문안을 주어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게 하여 사기광고, 과장광고를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ILO조약에서도 유료직업소개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 또는 공의기관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공료나 기타비용은 초청기업측에서 부담하든지 또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매년 제3세계 등에 무상원조하는 금액의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할 것이다).

## 5) 사업장이동 금지 문제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제도로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될 우려가 혼존하므로,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마땅하고, 차별대우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 만일 전면적 사업장자유이동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기업도산, 해고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사용자 측의 계약 위반의 경우 등이나 또는 계약기간(1년)의 도과후 계약경신시에는 일정한 제도하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 6) 노동법 전면적용 문제 - 근로기준법, 노동3권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 지라도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어 이들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노동법상 이미 '근로자'신분에 해당되고 제반 노동관계법이 강제적용되어야 함은 우리 실정법 해석상 분명하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고 실습생도 근로자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대학병원 전공의도 근로자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라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또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도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 신분이 있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외국인 고용 제한규정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더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한편 노동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에게도 모두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일부조항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3권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 DGB의 조직노동자중 8%가 외국인노동자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 7) 내국인과 차별이나 차이를 두는 것은 불가피한가?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내국인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다. 임금이 저임금이니까 외국

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동등대우하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차별대우는 인권보장의 차원이나 또 유효성차원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다. 산업연수제도가 저임금을 기초로 구조적 차별정책에 입각해서 실시되었지만, 제대로 가동되기는커녕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로 파탄상태로 되어버린 상황만 보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실제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인노동자에 준하는 임금을 사실상 지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연수생들이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넘어 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시장가격에 근접해 진 임금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없앴다고 하여 실제로 완전한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지 무조건 동일임금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나 직업능력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최소한 법적, 제도적 차별은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 8) 고용보증금 · 고용분담금 문제

고용분담금이나 고용보증금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 의견은 고용분담금제도는 설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분담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저임금을 도리어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보증금 문제는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억압적 감시체계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설정하지 않아야 하고, 대신 기업주의 여비 및 모집비용 부담문제로 전환해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

#### 9)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문제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상적 공개시장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6%(연수생을 합치더라도 37%)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른바 '암시장'을 통해 노동력이 거래되는 심히 왜곡된 구조를 그냥 두고는 그 어떤 정책도 공염 불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공개적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대부분의 수요가 공개 시장에서 충족되는 것이 가능한 틀걸이가 짜여져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간의 차별을 없앰으로써 불법체류로 흘러가려는 수압을 사회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그 핵심포인트라고 본다.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현존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해 사면과 양성화를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불법체류 취업 가능성을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뒤에, 새로운 제도시행 후의 적극단속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4.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또는 외국인노동자인권보장법 입법지침

##### (가) 총칙

1) 법의 제정 목적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대책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2) 이 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국적법상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 자로 하되,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3) 정부, 노·사·공의 대표로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관리·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토록 한다. 공의대표는 외

국인노동자관련 비정부단체에서 추천함.

-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사업장 규모 및 기간 등을 심의·결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위원회 산하에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따른 제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함.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조 함.

##### (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 1) '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제' 실시

-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취업금지
- 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의 2가지 종류 운용
- 일반노동허가는 취업가능 업종, 사업장 규모 및 기간 등의 제한이 있음
- 특별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며, 업종·규모·기간에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음
- 일반노동허가는 1년 기간으로 부여하되,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2) 외국인근로자는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도입함

-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국가지정 공공기관에서 인력 송출을 담당하게 함
- 현지 파견 노동부 공무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체결
- 인력 송출 회사에 의한 인력 송출 금지
- 모집과 알선 비용 및 근로자 왕복 여비를 고용사업주가 부담

###### 3) 충분한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 후 근무케 함 - 무료교육 및 교육시 임금지급(국고지원)

- 현지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실시 후 송출
- 입국 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및 적응 교육 후 실제 근무케 함
-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 한국노동관계법의 내용,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 또 적응 교육의 내용 중 일정 시간 이상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4) 사업주에게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후 시기 실시
-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리 책임자에게 실시

5) 입국 전·후에 건강 진단 실시

- 송출국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해 송출
- 입국 후 건강진단 실시, 불합격자에 대해 노동허가 취소가능. 이 경우 여비등 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6) 국가간 민간 지원 단체 협력 및 그를 위한 정부 지원

**(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노동법의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

2) 차별 대우 금지

- 외국인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 별칙

3) 사회보장법의 차별없는 적용

-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법의 차별없는 적용

4) 일정 조건 하 사업장 이동의 보장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 가능
  - 사용자의 근로계약, 노동관계법 위반 시
  - 차별대우가 있을 시
  - 사업장의 휴·폐업 시

· 폭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 기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의 경우 먼저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신청
- 고충 심사 후 당사자간 조정 또는 사업장 변경 조치

5) 공공직업안정 기관의 구직 알선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의한 구직알선 실시
- 사적인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금지

6) 귀국 시 지원 조치

- 귀국 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사업관련 정보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 가능

**(라) 벌칙**

1)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5인 이상의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였을 시

- 자유형

3)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증개·알선·파견하는 자

- 자유형

4) 노동허가 없는 취업

-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적용
- 퇴거명령, 강제송환

5) 노동 허가 없는 취업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동종의 내국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키는 경우

- 자유형

### (마) 부칙

#### 1) 이 법 시행 당시 미등록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면

- 귀국 희망자 벌금없이 귀국조치
- 일정 기간의 신고기간 설정하고 이 기간 내 신고 있을 경우 형사처벌 면제 또는 사면
- 기간 내 신고 있는 경우 노동허가 부여
-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2)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

###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법제화의 당위성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 1. 반한감정(反韓感情) - 위험수위에 도달한 분노

##### 필리핀 공항에서의 한국인 몰매맞아

일전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필리핀 청년 여섯명에게 둘러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 했고 이에 홍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여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봉변이다.

#####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에 대한분노

호주에서 막 귀국했다는 할아버지는 전화를 하여 대뜸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를 해온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인이 집단 구타를 당하였는데 경찰의 조사결과 한국에서 취업중인 필리핀 사람들이 당하는 수모와 학대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홍분한 시드니 공항 직원들이 무조건 처음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몰매를 가하기로 작당하고 벌인 폭력사태였다고 한다. 네팔을 여행하던 대학교수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이라는 이유로 불이 질려져 전소하였다. 연변 기아자동차 기술훈련원장 피습 사망사건이나 폐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그리고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위협행위 등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5년 9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손 발이 잘려진 이들 중 보상을 받지 못한 70여명이 몰려와 반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난입하여 대사관 현판을 떼내어 짓밟고, 폐인트 병을 던지며 한국을 규탄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 모든 봉변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다. 그 모든 봉변의 이유인 즉슨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에서 찾아 온 중국동포들 가운데에서도 현지에서의 대량 사기사건들과 한국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산업재해, 임금체불, 심지어 강간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 나면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치가 떨린다. 원자탄이 있으면 남한에 떨어 뜨리겠다”며 거세게 항의를 해 오기도 한다. “남북한 사이에 다시 전쟁이나 일어 났으면 하는 마음이 군 똑같습니다. 그래야 북조선을 지원해 남한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들의 항의는 근거가 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중공군이 개입한 것으로만 배

위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공군의 많은 숫자와 더 나아가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조선족 동포들이었다는 전언이다. 사실 얼마전 한국을 다녀간 중국의 조남기씨는 조선족으로는 최고위직인 부주석에 올랐는데 이 또한 한국전에 투입이 되어 공을 세운 것부터 출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분노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 한국인이 “WE ARE NEPALI”

필자는 종종 취업도중 여러 가지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해나 보상금 등을 전달하고자 다른 나라를 찾게 되는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 네팔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이 길을 걸어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쳐 가던 네팔의 청년 두명이 힐끗 얼굴을 살피더니 저 만큼 멈추어 섰다. 잠시 후 우리가 다가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로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를 물어 왔다.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이라고 답하자 그들은 대뜸 “우리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한번 들어 보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마 한국에 와서 취업했다가 돌아간 이들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외국여행에서 외국인이 한국말로 한국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갑기도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일어나 “그럼 한국말을 해 보라”고 했더니, 얼굴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지면서 “이 x팔놈아! 죽어 볼래”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혼비백산하여도 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는 곳마다 구걸을 하는 이들이 우리를 외국인으로 알아 보고 유창한 영어로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를 물어 대는 것이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꼬박 꼬박 “WE ARE NEPALI”(우리는 네팔사람이다)라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 네팔에는 크게 2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아리안 계통으로 얼굴이 조금 검고 윤곽이 뚜렷한 이들이고, 하나는 상당히 차별을 당하는 몽골리안으로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차림새 외에는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다. 봉변을 당한 후부터는 줄곳 네팔인 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서남아시아나 동남 아시아를 여행할 때에 봉변이 두렵거든 꼭 “WE ARE NEPALI” 정도를 꼭 외우고 갈 일이다.

#### ‘숯검댕이’되어 주검으로 고향 가

몇 년 전 한껏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3일, 건축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3일만에 사망한 중국 내몽고에서 온 교포 유영희(남, 49세)씨는 국립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된 후 병원비와 영안실 비용을 내지 못해 235일간 방치되다가 약 8개월만에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였다. 그것도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비보를 접하고 한국에 온 아들(18세)이 부천에서 공장을 다녀 벌은 돈 100만원을 가지고 가 병원 측에 사정을 하여 서두른 결과였다. 프라스틱 사출공장의 천정 지붕속에 창문도 하나없이 만들어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와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하고 세명이 온통 숯덩이처럼 타버린 방글라데시인 세명 모타레브, 굴짜르, 화룩의 처참한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루에 4구의 장례를 치루어 시신을 방글라데시로 보내고자 비행기를 기다리며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세찬 눈발 속에서 허무하게 허공을 응시하던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공사 바타차야씨와 그 직원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금년 초 중국에서의 한국인 납치사건이 일자 외교통상부에서는 발빠르게 중국에서의 한국인의 사건 사고 피해상황 통계치를 발표하였다. 98년도 84건에 108명, 99년도 182건에 218명으

로서 2년동안 17건에 18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망사고의 내용은 피살 4명, 지병 8명, 교통사고 5명, 자살 1명이었다. 그런데 성남의 일개 상담소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에서만 해도 항상 일주일에 두 세명의 장례를 치루고 하루에 4명의 장례를 치르는 날도 있으며 한해 평균 100여명의 장례를 치루고 있고 지하 창고에는 30여기의 유골이 쌓여 있다. 살아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쫓겨 다니다가 죽어서 조차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행려사망자 처리도 되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도 되지 못하고 있음이 동포들의 슬픈 모습이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 폭행, 사기 등의 상담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담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의 그 막대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조그만 피해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하겠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 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누가 닦아 줄 수 있으랴?

## 2. 외국국적 체류자 43만여명, 매월 3천여명씩 증가추세

#### 외국인노동자문제 영원한 숙제로 남게 돼

IMF 위기 당시 외국인노동자 귀국 행렬이 이어져서 98년 한해에만 8만여명 귀국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많은 이들이 당시 걱정스레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출국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하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나가면 할 일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져 온다. 이에 대해 나는 한마디로 “제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법무부 체류과에 문의를 한 결과 2000년 2월 말 현재 43만 7천여명의 외국국적자가 머물고 있으며, 매월 3천여명씩 증가세에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2000년 4월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3만 6천여명으로서 그중 6.0%만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30.7%가 산업기술 연수생이며, 63.3%가 불법체류 취업자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4-5만명으로 추산되는 밀입국자는 그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력의 94%가 단순 기능적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이 취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찾아 올까?

중국에서는 사장을 경리, 또는 총경리라고 부르는데 사장 한 달 월급이 인민폐로 500원 천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한국화폐 가치로 하면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이다. 그런데 한국에 오기만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 또는 10만원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루를 일해서 사장의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캐는 땅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중국동포들이 꿈을 안고 기회의 땅이자 고국인 한국을 찾기 위해 중국에서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에 온다. 계중에는 숱한 이들이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고서 빚을 갚지 못해 몰매를 맞거나 가정이 파탄되고 병석에 놓거나 야반도주를 하는 등 풍지박산의 아픔을 겪었다. 일부는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바다에서 실종이 되거나 일가족 5명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검이 되어 고국(?)땅을 밟기도 했다. 다행히 한국에 온 경우에라도 이내 꿈은 사라지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상상하지도 못할 차별과 냉대속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고자 출을 서고 있고 사기사건과 밀입국 행렬도 꼬리를 잇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남한 땅만한 작은 면적에 인구는 1억6천 5백만명이고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국가이다. 인도의 커다란 강줄기들이 빠져 나가면서 쌓아 놓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삼각주 지대로서 지하자원은 거의 없고, 해마다 홍수가 국토의 절반이 상을 훑쓸어 가기에 어떨한 산업시설을 세울 의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물에 잠긴 자기네 나라를 봄과 달라며 가난한 우리 상담소에까지 도와달라며 원조를 요청하는 지경이다. 나라밖으로 나가 주는 것만 해도 애국이고, 나가서 달려까지 벌어 오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이 있을까 싶다. 아주 노동자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거 '자본'은 이동하지만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학설이 무너지고 '자본'도 이동하지만 '노동력'도 이동하는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WTO 협정에 이은 블루라운드의 논의도 그 연장선이다. 이전에 '자본은 이동하지만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학설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이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레 흐르듯이 노동력도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 3.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 외국인 노동자 <한 지붕 세 가족>

외국인 노동자는 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로 알고 있지만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해외 현지 투자기업 연수생' 노동자들로서 월급이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계약을 맺고 연수명목으로 들어 와 있기에 현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중점으로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어 있고, 말 그대로의 노예신세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둘째 부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운영하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다. 이들은 지난 95년 1월 9일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어 비로소 30여 만원정도에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방문이나 관광으로 입국을 해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또는 연수생으로서 이탈한 모든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자'인 경우로서 이들은 월급 50-100 만원까지의 그래도 가장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지경이니 이왕 돈을 벌려 왔기에 이탈을 하여 다른 공장에 가기만 하면 월급이 뛰어 오르고,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는 기가 막히는 형편이다.

#### 공장사장이 비행기표와 여권을 강제로 보관

초창기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하면 15일간의 관광비자가 주어지고 이를 가지고 2-3년씩 불법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94년 6월까지 체류를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체류를 연장해 주는 조건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의 사장이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업확인서'를 제출하고 비행기티켓과 여권은 사장이 보관하며 기한내에 출국을 시키기로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두배로 내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을 집행하여 불법취업을 차단시켜야 하는 법무부가 취업을 조건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해 주었다는 모순된 모습이

다. 외국인 노동력을 쓰기 위해 무분별하게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을 하면 체류연장을 해 주는 모순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면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만 한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외국 노동인력을 유인하고, 불법체류와 취업을 묵인하고 방조하여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다.

#### 합법체류자는 '연수생', 불법체류자는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화 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연수생제도는 더더욱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심각한 양상으로 끌어 터지게 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한다. 법을 지키는 합법체류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상식이 무시되고 정 반대의 모순됨을 보여 주고 있다. 연수생에 대한 개선지침이 발표되기 전 까지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의 경우에 하루에 12-16시간씩 밤낮으로 죽도록 일을 하고서도 받는 월급은 고작 15-2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50-100만원까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는 사망사고 일지라도 최고 1,500만원까지만을 임의로 가입한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나마 회사나 송출업체가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보상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실제 산재를 당한 연수생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노동부의 산업재해 보상과 회사측의 민사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산업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모순됨의 이유는 '연수생은 합법체류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일 뿐이기에 노동자로서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불법체류 노동자는 체류는 불법이지만 노동자로 인정을 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돈을 벌기 위해 온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를 동경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불법체류자가 되고자 애를 써 직장을 이탈하기만 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산업기술연수생 중 2년 기한이 다 되었을 시점에 이들은 90퍼센트 이상이 이탈했다는 사실이다.

#### 수갑, 폭행도 모자라 강간까지-----

각 사업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경에 이탈자가 생겨나면 당장 일손이 끊길 뿐 더러 추가배정도 되지 않고 값싼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고자 골몰하게 되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금지,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고의적으로 5-6개월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송출업체에서는 작업장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다가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하고, 일주일간을 감금하고 하루종일 물한컵과 빵 한조각만 주어 아사직전에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가 고발되어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지난 9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동안 전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 넣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자초한 정책의 결과이며 필연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한편 명동성당 농성장에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듯이 1월 8일 새벽에 경기도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공장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속보가 도

달되었다. 결국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목에 쇠사슬을 감고 풍꽁 얌 손을 모아 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월급을 직접 제 손에 주세요!” “강간하지 마세요!” 라며 외치게 되었다. 이들의 절규는 해방 50돌을 맞이하는 새해 벽두부터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여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연수생들의 농성은 파장이 컸고 연수제도의 문제점이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당국은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개선지침을 발표하고 연수생들에게도 의료보험 적용, 산업체해 보상보험 적용, 최저임금 적용 등을 95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또 연수생 산업체해자의 경우 95년 3월 1일 이후의 사고는 산재보상을 추진하면서 그 이전의 사고는 보상해 주지 않았던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전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체해보상을 적용하면서 3년전 사고까지 소급하여 적용해 주었고, 이미 출국을 한 이들은 해외 공관을 통해 접수를 하면 보상을 해 주기까지 하는 협편이기 때문이다. 95년 3월 1일 이전의 연수생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상을 소급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 검찰, 월급 한 푼 안 준 사업주에게 ‘혐의 없음’ 결정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중 거의 100%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5-6개월에서 2년치까지의 임금을 떼이고 있으면서도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약점때문에 판공서 어디에도 호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전 방글라데시 출신 M. D 알리라는 이는 예일산업이라는 가구공장에서 2년동안 하루에 12-16시간까지 밤낮없이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한다. 그간 일을 한 기간의 월급이 천만원이 넘어 섰는데 사장은 한푼도 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 버렸다. 알리는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카에게 한국돈으로 400만원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왔다고 한다. 알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이대로는 절대로 돌아 갈 수 없다”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감옥에 가든지 제 될것이다”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카에게 준 돈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며 큰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으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외국인이기에 다른 방도를 강구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재차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더니 그제서야 사업주와 알리 양자를 조사하고서 그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정부지청(검찰)에서 결정문이 도착하였다.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으로서 그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고소인은 방글라데시 인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불법취업한 자로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었다.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알리가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사업주는 범죄혐의 없음이라는 것이다. 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불법체류자의 일한 임금, 그것도 2년간의 피땀어린 노동의 댓가를 떼어 먹고 주지 않아도 범죄혐의조차 없단 말인가? 차라리 결정 내용중 표현을 조금 바꾸어 <알리가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사업주의 처벌은 곤란하다>라고 하여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범죄혐의만큼은 인정하는 태도가 아쉽기만 하였다.

#### 노동부 장관명의 지침 체불사업주 처벌대목 ‘눈가리고 아옹’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사건 처리에 대해 당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항의했더니 근로감독관들은 한결같이 “나도 꼭 받아 주고 싶다. 그러나 내 목이 몇개이냐? 하나뿐이

다. 장관이 해 주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일개 감독관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느냐?”고 거꾸로 하소연을 해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장관이 해 주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고 물으니 노동부장관 명의의 지침을 보여 주었다. 그 내용에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요구 등의 신고사건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1.근로자 수가 5인이상 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2.사업주 입건등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더라도 3.사업주 소재는 파악되나 재산이 전무하여 체불 등의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하고 성의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킬 것 4.사업주 잠적등으로 해결이 곤란할 경우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결재후 종결처리 할 것등의 업무 지침이 지시되어 있었다. 노동부장관의 이 지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다만 ‘사업주 입건 등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더라도’라고 기준을 제시하고서 근로감독관들이 알아서 처벌을 하지 않도록 교묘히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를 찾아 가면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떼어 먹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다.

#### 강제 출국 당한후 해외에서의 농성으로 국제적 분쟁 야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도 산업체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주기는커녕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체불, 산업체해등과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들을 우선 강제 출국 조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93년 11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이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온(26세)이 불법취업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부 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동부는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었다.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서 앞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보도이다. 그렇다면 팔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려도 신고나 보상요구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산재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먼저 강제 출국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내용인 것이다.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외국인 노동자 농성사건이 터지면서 94년 2월 7일부터 산업체해 보상보험법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산재를 당하고서도 보상도 받지 못한채 강제 출국된 이들의 해외 농성과 집단적인 움직임,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서 94년 9월부터 출국을 당한 이들에게도 소급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보상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 ‘애완견’보다도 못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추진하던 중에 구속되어 감옥안에서 7월 17일자 신문을 펼쳐 들었다. 7단으로 크게 편집된 기사의 제목은 <애완견 보호법 만든다>였다. 지난 7월 어느 소비자단체가 ‘애완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애완견 보호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서두르고 있다는 신문사를 접한 적이 있다. 최근 애완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애견센터 업주들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 동물학자등 전문가로 구성된 애완견 자문위원회

는 소비자들이 개의 질병, 또는 사망시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조정을 하고 애견센터가 구입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약정서와 건강진단서, 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무역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 개 수입 실적은 93년 57마리, 94년 173마리, 95년 440마리로 해마다 3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올해만 해도 피해 고발사례가 20여건이나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3년동안 수입된 개가 천마리에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애완견 보호법을 추진하는 마당에 당시 2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강제징용 서러운데 동포차별 웬 말이냐!”

한편 지난 해 12월에 발효된 ‘재외동포법’은 중국동포를 동포의 범주와 혜택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강제징용 서러운데 동포차별 웬 말이냐!”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딸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딸이 아니냐?”는 구호를 외치면서 뜨거운 폭염아래 단식을 하며 철봉끝에 거꾸로 매어달려 분노를 표시하였다. 과연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갔는가? 일제의 침략과 수탈속에서 강제징용, 학병, 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했거나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짚주립을 면해 보고자 또는 더 나아가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하려 열혈지사들이 떠나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피흘려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이들을 지원한 이들과 그 자손들은 동포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민족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애국심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 조차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중국과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국내의 불법체류 동포들에게도 생활안정과 귀국을 보장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벌금면제 출국기간이 지난 6월 말로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추방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국내 동포들의 한줄기 희망을 앗아가는 검은 구름으로 불길한 예감을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대들 중 호적이 버젓하게 살아 있으며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살다가 고국 산천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호적은 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법체류를 문제삼아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해당자 대다수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서 7-80에 이르러 있고 그 숫자도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들은 ‘언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느냐?’면서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외국인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활발한 외국인노동자 운동을 가져왔다. 각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운동단체들은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의 개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외국인노동자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농성을 통해 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 최저임금제 실시, 의료보험 적용 등을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경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선도 이루어 내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누워서 침뱉기’의 모습이 안타까

운 현실이었다. 한편 상담이 폭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첫 번째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이었다. 법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공청회, 캠페인 등을 진행하던 중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운동을 탄압하며 발생한 김해성 목사, 양해우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동안 농성을 하면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구속사태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상담소 탄압중지를 위한 3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사회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기독교계, 그리고 가톨릭쪽에서는 법제정을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10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당시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 외 28명이 서명한 의원입법안,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방용석 의원 외 34명이 서명한 의원입법안 등 4개의 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을 둘러싼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 4.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실태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밤낮없이 뼈빠지게 일을 해 주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을 달라고 항의를 하면 경찰에 불법체류자라고 신고, 체포시켜 추방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동포 김희택씨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40만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 5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을 주지 않아 그만두었고, 상담소에 호소를 해 와고 이를 안양노동부사무소에 진정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업주와 함께 출석을 하였는데 이 업주는 이내 휴대전화를 끼내어 경찰 112에 “불법체류자 두명이 있으니 체포하여 추방을 시키라”는 신고를 하였다. 나이가 지긋한 동포 부부는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딸같은 업주의 치마꼬리를 불들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월급을 받지 안겠다”고 몇번씩 다짐을 한 이후에야 눈물을 뿌리며 도망을 치듯이 빠져 나갔다.

중국동포 장용남(42세)씨는 동포 43명과 함께 주택공사 운암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일하였는데 한국인은 모두 노임을 지급받았지만 동포들만 노임 1억 5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체포되어 조사 후 외국인보호소에 100일간 수감되었다가 강제 추방이 되었다. 억울함에 치를 떨다가 천여만원을 주고 다시금 한국에 왔으나 아직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길원(36세)씨는 손가락을 모두 잘리우고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다가 삽자루로 두들겨 맞아 허리를 다친 채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되어 방광파열로 피오줌을 싸며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야 했다.

지난 6월 3일 중국인 왕군당씨는 출근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충격당해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다가서는 경찰을 보고 “괜찮다”며 깨진 턱뼈와 쏟아지는 치아를 추스리며 그 자리를 피했다. 자동차가 뺑소니를 쳤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 보았지만 피해자가 도리어 뺑소니를 쳤다는 것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들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약점이 얼마나 이들을 옥죄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준다.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찾아 왔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전체 상담의 70퍼센트정도이고 외국인노동자 전체의 약 80퍼센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돈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나 상담소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등의 반 협박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시키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경우 무분별한 단속이나 체포, 연행보다는 피해복구를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음을 볼 때 전향적인 모습을 본다. 한편 이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아예 처리조차 외면을 하였다. 고소, 고발에 대하여서는 무혐의 처리를 해 왔다. 그러나 19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독관들은 사건의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여 체포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으로 규탄집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다.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있거나 할 경우에 주소 등 모든 내용을 알아 오라고 육박을 지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라리 포기를 생각하게 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리'이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아려 문제에 접근을 하고 해결을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한 두번 확인 해 보고서는 사업주를 입건하고서 검찰에 송치를 한 후 책임이 끝이 났고, "우리가 돈을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한국인도 소송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진다.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체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검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지금까지 한국에 취업했다가 돌아 갔거나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 이들중 많은 이들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고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채 체포되어 강제 출국된 이들이 많이 있다. 중국교포 류정기(63세)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나 그토록 그리던 조국에 꿈을 안고찾아 왔다고 한다. 선조들의 고향인 김제를 찾았고 '이제라도 조국을 찾아 와서 고향땅을 밟았고,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 성묘까지 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에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를 만드는 사출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옷걸이를 스무개쯤 뽑았을 때 사출기에 손목아래가 찍혀 다 부서지고 손가락 네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였다. 사업주는 650만원을 들여서 봉합수술을 해 주었는데 얼마후 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부어 오르며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후속치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사업주는 "당신 때문에 1차 치료비로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심사가 혼란하니 차라리 치료비가 싼 중국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며 더 이상의 치료와 보상을 외면당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를 찾아 왔을 때 손가락은 오이 만큼씩 부풀어 있었고 봉대를 풀자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을 하여 봉합한 손가락을 모두 절단을 하고 360일동안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결과고 있고 치료비가 1300만원을 넘어 서게 되었다. 그 동안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사장을 만났는데 "가진 재산이 없으니 삼월세 보증금이든지 노후된 사출기 전부(2대)를 다 가져 가라. 더 이상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로 처리하고자 요양을 청구하면서 단계를 밟았지만 5인아하 사업장이기에 산업재해 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만을 통보받았다. 어쩔 수 없

이 진정서등을 각계 요로에 제출하며 할아버지를 청와대 민원실까지 가시도록 했으나 결국 안된다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을 확인했더니 소송을 하면 100% 승소를 보장하지만 100% 절대 소송을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재판 실익(實益)이 없기 때문이기에 차라리 인지대라도 아끼라는 것이었다. 류정기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돌보아 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제 얼마 후에 중국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보상비는 제치고서라도 병원비는 어떻게 갚으면 가족들에게는 무어라 설명해야 하느냐?"며 아침마다 전화를 해 온다. "한국에서 콩팥을 팔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3천만원만 받으면 된다. 콩팥을 떼어도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으니 그 돈에서 1500만원은 병원비를 깎고 남은 돈은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어 보상을 받아 왔노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니 밤이 늦은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달라"고 말을 이어 가시는 데 차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말을 끊고서 "나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잡혀 가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큅 큅 울음을 터트리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가마니는 될 것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프레스나 사출기등의 작업이 위낙 위험해서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취업을 거리게 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인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도 재해가 빈발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안전교육, 주의사항, 작업지시등이 대충 눈치로 이루어지고 또한 대충 알아 들고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는 실정이고 작업을 시작한지 한시간도 못되어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보상요구에 대해 "내가 하루라도 일을 시켰다면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지만 제품 몇 개를 뽑아놓고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며 난색을 표한다. 더군다나 생산성을 이유로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 기계의 자동안전장치를 떼어 내는 등 기계를 변조하는 일도 산업재해를 부르는 내용이다. 오래된 프레스의 경우 자를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고 발판을 밟아야만 작동이 되고, 뚜껑이 열려 있을 때에는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의 기계는 원적외선 감지장치등을 설치하여 프레스가 작동이 되는 중에도 손을 비롯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중단시켜 재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설비를 제거한 결과 이에 대해 외국인 산업재해자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못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우리의 잘린 팔과 손가락이 아마 몇십가마니는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노동부는 대책과 보상을 외면하였고 특히 영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인 결과 노동부의 보상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한편 사업주도 가진 것이 없어 배상을 하지 못하기에 대부분이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강제 추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심지어는 보상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공장에서 쫓겨나 출국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제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 희망이 보이지만 이전 피재자들에 대하여서도 소급적용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 노동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며 특히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금의 5%만이라도 할애하여 한국어교육과 안전교육 및 작업환경개선에 투자한다면 산재를 예방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출을 격감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그러나 문제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면 노동력이 상실되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구걸을 해서 살아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의 이슬람국가에서는 지금도 형법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했을 경우 지금도 작두로 손가락 등을 자르는 형벌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이 잘리면 그는 평생을 처벌받은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가야만 한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더 나아가 인도나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대부분의 나라가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는 오른 손으로 식사를 한다. 한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물 한컵을 준비해 들어가 뿌려가며 더러운 손이라고 하는 왼손으로 밑을 닦는다. 손을 잘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한손으로 밥도 먹고, 또 그 손으로 밑도 닦아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걱정을 접하게 된다.

### 불법체류자의 출국시 '벌금'이라는 장벽

단적인 예로 중국교포 임호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카에게 400여만원의 엄청난 금액을 주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던 중 18개월만에 체포되어 출입국관리국으로 끌려 갔다.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원중 벌금으로 18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20만원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없어서 배표를 구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단지 몇만 원이었다. 중국에서 꾼 돈은 어찌하며, 빈 손으로 돌아갈 걱정을 하던 임호씨는 눈 앞이 깜깜했을 것이고, 끝내 1993년 11월 9일 구로동 고가차도위에 유서를 써 놓고 뛰어 내려 생을 마감하였다. 이 피값을 누가 책임져야 만 하는가?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이나 3층에서도 주저없이 뛰어내려 다리가 분쇄골절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제 2000년 7월 1일부터 또 다시 단속과 벌금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예견되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어 진다.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불법체류자들은 의료보험 없고 일반 진료비는 너무나 비싸 진료는 그림의 떡이다. 몽골인 바트센드씨가 급성맹장염이었는데 진통제 몇 알을 먹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혼절하여 병원 후송되었고, 수술을 했지만 맹장이 파열되고 복막염이 되어 결국 폐혈증으로 하루만에 사망을 하였다. 스리랑카인 서짓 쿠마라씨는 작업 중 발등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은 무릎 밑을 절단하였다. 서짓 쿠마라씨는 절단하여 없어진 부위가 '아프다' '가렵다'며 호소를 해 오는데 의사에게 물었더니 <환각통>이라는 설명이다. 아픈 배를 감싸쥐고 진통제 몇 알에 의지하여 참을대로 참다가 결국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중,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는 이미 혀장염이 터져 복막염을 일으켰고, 결국 8가지 합병증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보내고 일반병실로 간신히 옮겨와서 2개월이 된 네팔 사람 엠 구릉씨등의료문제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에는 병원과 약국, 의사와 약사가 홍수처럼 넘치는데도 외국인들은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인권규약에는 응급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최소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내국인에게처럼 적어도 행려환자처리가 요청되어 진다.

###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한국어 연수는 거의 전무하다. 항공편으로 도착을 하면 분당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다음날 인사정도를 배우고 연수계약서를 쓰고 서 다음날 현장으로 이동을 하여 작업에 투입이 된다. 거의 모든 작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이리 오세요"라는 존댓말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리 와"만 통용이 되고 "come here" sms "이리 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사장나 부장에게도 "이리 와"라고 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 가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디에다 반말을 하느냐?"면서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몽골어로 <이리와>는 '미친 놈'이라는 뜻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왜 욕을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 또 중국어로 "쉬팔루마"(식사하셨습니까?)라는 인사를 하자마자 아침부터 욕설한다며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래동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2층 한켠의 구석에서 방글라데시 사람 화룩, 모타레브, 라흐만 3인은 아래층에서 외쳐대는 "불이야!"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숫덩이로 변해 버렸다. 공장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니 진통제 <펜잘>을 사먹도록 안내를 했고, 약국에서 <벤졸>을 사다 들이키고 혼수상태에서 후송하여 위세척을 하여 살려낸 적도 있다. 최소한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에의 적용을 돋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이들이 돌아가서 무역을 할 때에도 무역상대국은 한국이 되어 한국의 세계화와 국가이익에도 부합이 된다. 민간 상담소들이 진행하는 한국어교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공장을 그만 두겠다는데 나가지 말라고 사장님이 옥상에서 엎드려 뺏쳐를 시키며 폭행을 하고 그래도 간다고 하자 옥상 난간에 앉혀 놓고 따귀를 때리다가 밀어서 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양 팔이 다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6개월간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도 사장님은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만을 물었다며 힘없이 신세를 한탄하는 네팔인 고빈다.

중국동포 서문봉(45세)씨는 지난해 5월 31일 한국인의 몽둥이에 맞아 피살을 당했다. 아산 재단 강릉병원에 실려가 뇌수술을 받고 치료도중 뇌사에 빠졌다. 범인은 돈도 가족도 없이 몸으로 빼우겠다며 구속이 되었고, 병원측에서는 치료비를 대신 받으려 장기기증을 주선했지만 책임을 질 가족도 없어 불발되었고 6월 10일 끝내 사망하였다. 장례라도 치르려고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비 130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 시신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앞에 물러서야만 했다. 부인이 입국을 하고 사망한 지 5개월이 넘어서자 부인이 찾아와 "고국이라고 찾아와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5개월째 시체를 놓고 어떡하란 말이냐? 나도 따라 죽겠다"며 통곡을 하였다. 협박성 통곡에 병원에 사정을 하고자 찾아가니 그 동안의 영안실 안치료가 500만원이 추가되었고, 안치료까지 지불해야만 사체를 내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끝에 정주영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청와대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다. "고국을 찾아 와 맞아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한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 땅이 과연 이들의 고국입니까?" 그 이후 며칠 후 장례를 치루었지만 보상은커녕 고인의 월급 450만원과 꾸어준 돈 200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 라흐만은 국립대출신으로서 한국인 공장장이 머리를 부수고 손, 발을 잘라내고 드럼통에 넣어 휘발유 부어 태워 산 속에 있는 배수구에 버려 놓았다. 수사를 통해 뒤

늦게 사체를 찾았는데 대사관에서는 코오란 울법에 따라 화장을 할 수가 없으니 사체를 송환해 달라는 요구였다. 어떻게 난도질당하고 불에 타서 등판만 남은 그 사체를 차마 보낼 수가 없었다. 만일 그 사체가 가면 방글라데시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할 것이고 한국은 야만국가로 난도질을 당할 것이 염려되었다. 알량한 민족자존심으로 고민을 하던 중 일주일 동안 사체송환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방부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게 화장을 하였고, 유골을 보관중에 있다.

중국동포 김인성(48세)씨가 지난 98년 3월 3일 부천의 한 공장에서 분신 자살하였다. 그는 근무했던 공장 복도 벽에 스프레이로 사장을 지칭하여 ‘나쁜 놈 김\*\* 천벌을 받는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 -金寅星-’이라고 마지막 유서를 써 놓았다. 무슨 한이 그렇게도 쌓였는지 사장을 저주하며 죽어갔는데 경찰조사에서 사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5개월이 되어서야 보상 한푼 없이 간신히 장례를 치루고 부인은 “‘한국이 슬프다’는 남편의 마지막 글이 마음에 걸린다”며 “왜 고국인 한국이 우리에게 슬픈 나라가 되었는가?”라며 울음을 터트린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도 이란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반면에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의 동남아시아인들은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좀더 왜소하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차별을 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모두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한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감등이라고 놀리기 일쑤이지만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차 한잔 드시라. 영어를 배울 수 없겠느냐?”며 대접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내에서 권회로씨에 대한 일본의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못 본체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이중인격은 아닐까?

또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들 까닭에 주머니에 수표 한두장씩 지참해야 하는 비참한 모습들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임을 사칭하는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몽골인 샤인 자르갈씨는 연천경찰서에서 경찰 총격으로 두부 관통상을 입었다. 그 내용인 즉슨 러시아 르랫게임을 하듯이 권총에 총알 한발을 넣고 계속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6번째에 격발이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명을 앞에 두고 이렇듯 장난 아닌 장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이 외국인에 대하여 치료도 채 끝나지 않아 치아를 다 고정을 하였는데 먹지도 못하며 안면이 마비되어 있는데 강제퇴원시켜 보상 한푼 없이 강제추방을 시도했던 바 경찰청장에 항의를 하여 재입원을 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으로서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 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 6조와 유엔법 제 2조 2항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

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 한,일 양국 교회협 인권위원회에서 <전후처리, 전후보상과 재일 한국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협의회가 열렸었다. 여기에서 한국측 사례보고로 정신대 배상문제(발제-정대협 김경희 총무)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발제-김해성 목사)발표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발제가 끝나자 먼저 사례를 보고했던 김경희 총무께서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 어떻게 배상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였다. 어떤 목사님은 “50년도 더 지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금도 배상을 요구하며 유엔에 제소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국가가 50년이 지난 뒤에도 제소를 하고 배상을 요구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자탄하였다. 그런데 결국 작년 여름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 한국에서 취업도중 산업재해를 당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이들이 집단으로 반한(反韓)시위를 벌이며 한국정부를 규탄했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한국에의 꿈’(KOREAN DREAM)은 사라지고 없다. 다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국에의 증오’와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만이 덧칠되고 있는 순간들이다.

## 5. 세계화 시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우리가 이정도로 살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과 위기극복은 어디에 그 해결방안이 있을까? 또 국가의 이익과 미래 발전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 지하자원이 많아서 석유를 수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일한 비결은 외국과의 무역거래 통해 달러를 벌어오는 것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심각한 무역 역조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자동차 몇십만대 수출의 이익금보다 영화 <타이타닉> 한편의 이익금이 크거나 비행기, 잠수함 몇 대씩만 들여와도 적자가 된다. 문제해결의 비결은 우리에게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그 나라에 물건을 팔아서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이다. 물론 위기극복 방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모든 국정의 방향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그 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 갈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우리 기업도 그들 나라에 진출해 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바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아니하면서 현지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더욱기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바 교포들이 40년, 50년만에 꿈을 안고 찾아 와서 임금을 떼이고 손이나 팔이 잘려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이들이 허다하다. 중국교포(조선족)들은 연변 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등에 밀집되어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에 돌아가 교포들에게 고국에 대해 무어라 설명할 것이며,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그래도 고국의 기업

이기에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우리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나 자신이 교포로서 그런 상황을 당하고도 그냥 추방되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불이라도 지르려고 쫓아 다니지는 않을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안타까와 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통한 국가의 위신, 이미지의 실추에 대해서는 눈 깜짝도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 6. 과연 외국인노동자를 꼭 써야만 하나?

우리에게는 약 25만여명이 취업중에 있는 바 3D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 한국인 기피하는 프레스, 사출, 도금, 염색, 도장, 화훼농장, 가축사육, 영종도신공항 건설 등의 외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런 마찰적 성격의 인력부족현상은 교육제도개혁 및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즉 정부의 능력개발 기능이나 직업안정기능의 획기적 강화로 해결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류 인력을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 수준으로만 감소시키고 인력개발하면 노동력 부족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 3D 기피현상은 노동자들의 게으름이 만든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실성없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위정자와 가진자들에 의해 번성한 향락, 유흥,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하게 됨으로 생긴 근로의욕의 감퇴등, 교묘하게 얼커있는 부폐의 사슬이 만들어낸 현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기형성이 파생시킨 인력부족 현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으로 체워지는 것이기에 문제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외국인력의 도입은 한국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산업구조개선에도 방해가되고,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우선 입맛에 달콤한 저임금노동력에 중소기업들이 집착한다면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지금 고통스럽지만 빼를 깎는 경영혁신과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근원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이상 외국인력의 필요유무를 논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필요의 유무를 떠나서 벌써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현실이기 때문이다.(불필요 때문에 강제로 입국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여러나라에서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문제를 파헤쳐 가능한 현실의 대안을 모색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 신조어(新造語) “실업난 속 구인난”

근래 대량 실업사태속에서도 5인이하 영세 사업장이나 3D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다고 하루에도 30~40여건씩의 구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측에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었을 시에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1인 고용당 3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에 금번 벌금 면제기간에 외국인들을 많이 내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 실업자는 양산이 되었지만 5인이하 영세 사업장이나 3D업종에는 취업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사업주들은 “실업난 속 구인난”을 이야기하며 내보낸 것을 후회하며 다시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다고 요청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중기협의 인력박람회에 사무직과 서비스업에는 대거 몰리고 생산직에는 고작 6명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5인이하 영세사업장은 산재적용 배제해 온 결과이며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산재, 민사배상 불가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는 현명한 판단이었

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그 피해도 그들이 감수해 왔다. 바람직한 경제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경제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3D 업종은 물론 생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실업율은 높고 노인인력이나 여성인력의 취업율은 극히 저조함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 놓여져 있다. 이런 문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재해 보상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4인 이하의 사업주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빼돌려 놓으므로 민사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처벌이 되지 않기에 임금을 청산하는 일도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필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초 생산현장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합해져야만 자동차와 같은 첨단 제품이 완성이 되어 진다는 것이다. 생산은 꼭 해야 만 하는데 일꾼은 없고 바로 그러한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부르고 채워 가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경제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면 먼저 마음놓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실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꼭 필요한 인력은 최소화시켜 도입하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고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

## 7.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연수생 제도 폐지해야

연수생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각계에서 연수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우선적으로 그 제도와 운영의 편법성에 문제가 있다. 연수생명목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 연수는 없이 단순노동을 시키면서도 그 법적 지위는 연수생이므로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말이 연수제도이지 단순인력을 쌍값에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문제는 이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실패임을 분명히 한다. 여러가지 문제는 첫째 불법체류자보다도 열악한 근로조건은 연수생들이 이탈하여 불법취업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어(96년 8월말 현재 약 35.2%) 제도의 존속을 위태하게 하고 있고, 둘째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쌍방간의 국가를 통해서 들여 오는것이 아니라 송출업체를 통해 들여옴으로 인해 송출업체의 비리가 심각하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연수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가 인정하는 송출업체에게 5000달러에서 요즈음은 일만달러까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연수생으로 입국하고 있다. 실제 현지에서 5천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논, 밭을 팔고도 모자라 빚을 내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우리 연수협력단과 맺은 현지 송출업체가 연수생 선발시 1인당 국가별 징수상한 금액표에는 미얀마의 340 US\$에서 시작하여 최고 금액은 파키스탄 1300달러까지일 뿐이며 이는 항공료, 신체검사비, 교육비, 여권, 비자수수료, 세금, 보험료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업체는 5천에서 일만달러의 과도한 비용징수의 이유로 한국의 초청 단체에게 로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서 가장 큰 송출업체 비리의 출발이다. 한편 이러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한 연수생들은 월급 30여만원으로는 도저히 이자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작업장을 이탈하여 그래도 고임금인 불법체류자로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연수협력단을 설치하고 관리비용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는 ‘고양이 입에 생선을 맡기듯’ 노동자의 사용과 관리를 사업주단체에 맡긴 것으로 최소한의 상식에 어긋난 조치이다. 또한 중기협은 연수업체에게서 외국인 노동자들 1인당 연수관

리비로 260.000원(2년)씩을 받아서 그 수입금액이 96년 7월말 현재 42억 3천 9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이행 보증금으로 연수생 1인당 30만원씩을 추가로 받아 몇십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이자 5퍼센트 중 4퍼센트를 일방적으로 전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함으로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배의원이 폭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이재오 의원(신한국당)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관련법'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되고, 외국인노동자 상담단체와 종교계에서도 비슷한 시기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안을 입법청원한 상태이다. 이에 맞서 중기협은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된다면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사에 의하면 중소 기업주들은 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수돌박사의 조사연구(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1.500개의 중소기업 체 대상)에 의하면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68.9%나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이유는 1) 연수생에게 임금외에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의 80%수준의 내용을 줄 만큼 다 주면서 욕을 얻어 먹을 필요가 없다. 2)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다. 3)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 사용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클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수생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하여 국내 동종근로자의 79%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중기협이 주장하는 대로 노동비용의 상승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코리아 리서치 센타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언론인, 노동조합장, 기업주, 경총, 중기협등의 단체의 임원등 150명) 기명 설문조사 결과 1)노동관계법 적용-91.3%찬성, 잘 대해 주어야-87%, 법 제정 필요-79%가 찬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필요할때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연수생들을 배당받지못하는 영세업체에서는 벌금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있는 제도가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살펴볼때 중기협이 고용허가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된 주장은 '중소기업의 비용상승'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엄청난 이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법제정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중기협만 반대하고 실제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주들은 법제정을 찬성하고 요구하는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기협의 연수 협력단장직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퇴임한 후 오는 자리로 굳어져 있으며, 1대는 물론 현재의 2대 단장 또한 퇴임한 출입국관리국장이 맡아 오고 있다. 또한 이전 1대 중기협의 연수협력단 초대 단장인 조xx씨는 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뢰해서 구속되었던 바 석방이 되어 다시금 연수협력단장으로 복귀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중앙기업협동조합중앙회(연수생의 모집, 알선, 연수 사후 관리를 담당)에 설치된 산업기술연수협력단에서 작성한 연수 업체의 선정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중 인력부족율이 5%이상인 업종
- ② 우선 선정 대상 업체로서 일정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자의 고용 업체
- ③ 상시 종업원 10~300 명 이하의 업체

위의 3가지 선정 기준만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의 도입은 그 목적이 훈련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산업 기술 연수는 전혀 없고, 단지 연수업체의 지휘 종속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지니는 실제적 지위가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임은 명백하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이 문제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에는 연수제도와 관련된 인권 침해사례 보고서로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잘못된 제도까닭으로 선량한 기업주나 관리자가 노예감독자로 전락하고 마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연수협력단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저임금으로 착취한다는 비난에 대해 생산성에서 내국인력의 87.4%이고 임금은 내국인력의 79.3%인 60만 9천원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 생산성, 숙소식사제공 고려하면 상당수 연수생은 내국인과 동등한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줄 것을 다 주면서 욕을 먹기보다 합법화 시키면 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이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와 불이익이 심각한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법무부 훈령제 368호<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단지 '훈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 신분이라는 산업기술연수생도 단지 그들의 체류가 합법적일 뿐이지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및 각종 사업장내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가장 악랄한 일본의 연수제도를 본따 온 제도로서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최소한 국가간의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할에도 단지 법무부장관의 훈령만으로 특정부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도 국가나 공익기관이 감당해야 할 내용을 고양이 입에 생선을 물려 놓듯이 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사업주의 연합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모두 위임한 결과 최소한도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이익집단의 논리만이 관철되어 왔다. 그토록 파문을 일으키며 과행을 가져 왔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보완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에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랄한 제도로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연수생 신분에서 받는 저임금으로는 입국시 꾼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30퍼센트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하는 바 세사람 중 한사람이 이탈을 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제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수생이 이탈을 해도 이탈자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한다. <산업 기술 연수 관련 사후 관리 방안>에 의거 업체에서 소속된 산업 연수생의 이탈율이 높으면 다음 인력배정에서 제외되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이 높은 인력송출회사의 경우 송출권을 박탈하고 해당송출국가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

익을 주겠다고 발표한데 기인하고 있다. 추가 배정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고 이쓴 모습들을 볼 때 실제 이탈율은 보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 8. 외국인노동자 합법화해야 할 이유들

외국인노동자 합법화는 기업주들의 요청이다.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업주들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 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1. 저임금이기에 (10%) 2. 인력난때문에(79%) 3. 기타 실제 외국인력을 쓰는 이유는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인력난 때문이며 약간의 임금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한편 안정적인 외국인력의 고용을 확보할 수 있고, 현행 연수생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준비와 1년여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복잡한 사업장은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불안에 떨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분리독립하여 새로이 출범한 소기업연합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력의 합법화를 환영하고 있다.

### 불법체류 취업자 고용에 대한 불안과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 많은 중소기업주들이 인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취업자들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바 국가경제를 위한 생산활동이 불법의 토대위에 구축되고 있으며, 불법이라는 굴레 까닭에 사업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가 단속과 과도한 벌금에 대해 항상 마음을 졸이며 불안한 처지에 떨고 있다. 합법화가 되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마음놓고 고용하고 외국인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우리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들이 우리의 경제에 이바지 했음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먼저 들어 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이미 잘 적응을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 할뿐더러 숙련공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바 잘 적응한 이들은 모두 강제로 추방을 하고 생짜인 연수생을 새로이 들여오는 경우 먼저 들어 온 이들이 겪었던 몸살과 아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15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도 산업기술연수생들에 대해 현재 체류기간 2년까지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3년으로 연장하였다.

###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합법화가 필요하다.

불법으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입되고 있는 산업기술 연수생들 조차도 적절한 신체검사를 받고 들어 오는지 의심스럽다. 그 결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콜레라, 문동병, 매독, 등 '국가 법정 전염병'이 발견되어 강제 출국조치 된 이들이 248명이라는 보고 비자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10여만명에게서는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각각 노출된 국민건강을 위하여 합법화가 필요하다.

### 송출비리와 사기사건을 막기 위하여

얼마전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입국사기문제가 심각하였던 바 거의 2만 세대이상이 사기를 당했으며 그 액수는 무려 700억원을 넘고 있다. 이 사기당한 사람들의 82%가 연수생취업 사기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기협>의 중국 송출업체가 송출업무를 5개의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어 하청업자들이 동북3성을 돌며 5백만원씩을 받고 송출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 많은 사기범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동포들을 속인 것이다.

### 밀입국과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지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 즉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이들중 가장 많은 수는 중국교포들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사기당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밀항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항을 하기위해서도 거액의 소개비를 지불해야됨은 물론 오는 도중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항상 노출되어있다. 최근 중국교포 일가족 5명이 밀입국하기위하여 생선 냉동창고에 몸을 숨겼다가 그대로 동사하여 죽는등 밀입국과정에서 귀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늘고있는 추세는 한국에서 불법체류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단속을 통해 혹은 좀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1인당 500만원이상의 거액의 중개료를 지불하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밀항하는데, 철저한 첨조직을 통해 외국인을 모집한 후 일본으로 보내고 있다. 이조직은 주 80여명이상을 밀항시켜주는 대규모 조직으로 안기부 국제범죄 조직관련 직원에 의하면 일본의 폭력 조직배 야쿠자나 러시아의 마피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밀항하는 사람들중에는 한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람들, 심지어는 살인을 한 사람들이 피신하기위하여 밀항을 하고 있어 범죄자들의 은닉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밀항을 단속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밀입국 밀항이 성횡하는 것은 "일단 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11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들속에 섞여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밀입국하는것으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얼마나 부실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주무 부처인 법무부 조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나 거주지, 그리고 행태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강과 권위가 심각히 훼손되는 문제이다. 특히 중국 한족과 조선족의 밀입국의 경우 초기에는 공해상에서 어선 밀창에 실려 들어 왔으나 요즈음은 중국 하남성등에서 배를 사서 몇백명씩 남해안에 들어와 배를 버리고 잠입하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공작원들이 함께 들어 온다는 소문으로 공안당국이 긴장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한국보다 3배정도 임금이 높은 일본으로 400-500여만 원을 주기만 하면 밀항을 시켜 주는 조직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심지어는 700-800여만원을 주고 한국에 와서 일정기간 노동을 하고 벌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어 일본으로 건너 가는 경우도 성행함으로 한국은 일본에 밀항을 하는 경유지로 이용되어 지기도 하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에서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며칠 뒤에는 일본의 동경에 나타나 활

보하는 사태까지 일어 나고 있다.

####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으로서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 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 6조와 유엔법 제 2조 2항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외국인의 범죄행각과 외국인이 범죄 대상자로서 무방비 노출을 막기 위해

한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금이나 송금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현찰을 소지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범죄자들의 범죄대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 땀흘려 벌은 돈을 브로커에게 맡겨 달려를 밀반출하다가 브로커가 체포되어 몇백명의 임금이 압수되어 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오명과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이다.

####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와 같다면 '세계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네팔 왕립대학교나 방글라데시 국립대학등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도 많다. 이들은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 서 과연 우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들중에 일본에 건너가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본에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남미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남미 사람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일본에 왔었고 이들이 돈을 벌어 돌아가서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사장들이 되어 친일본 우호정책들을 펴 나간다고 한다. 얼마 전 폐루에서는 후지모리라는 일본인 3세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제 나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일본인을 세우다니!'라고 의아해 한다. 그것도 한표 한표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있을까?

#### 제3세계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국제노동기구(ILO) 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취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난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외국인력의 문제로 인해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외

교적 마찰의 소지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사용비용을 오히려 외국보다 비싸게 지불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이나, 노동착취의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연변 기아기술훈련원장 피습사건이나 페스카호 선상반란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위협행위등은 이러한 상황을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95년 9월에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위를 비롯해서 항의공문 비난기사 등 전세계적인 비난이 벚발치고 있다. 이윤추구 내지는 경쟁력강화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기치하에서 인류의 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제3세계와의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제도를 평가할 때 단지 중소기업에게 어느 제도가 유리한가하는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조선족을 포함한 인근 개발도상국과의 선린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가 기강과 권위의 확립,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60% 이상이 불법체류자인데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밀입국 사태속에서 그들속에 북한 공작원이 함께 잠입하고 있다는 등의 안보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임금이 3배정도 많은 일본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마음대로 밀항을 통해 빠져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살인범이 국외로 도주를 하며, 한국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기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수호를 위하여

이전 국회에 제출된 이재오의원의 법률안에 대하여 서명을 했던 C의원이 돌연 서명철○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기협의 치열하고도 위협적인 로비의 결과로서 결국 그 의원은 서명을 철회했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이는 입법부의 체면이자 국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한 입법권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9. '한국의 따뜻함'을 보여주자!

얼마 전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요양소 <쉼터>에 네팔인 '채왕'이라는 사람이 일년여를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중 문동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었다. 물론 요양소의 환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혈액검사, 피부 조직검사등의 나병검진을 받기도 했었다. 채왕은 그동안 번 700여만원 전액을 송금사기 당해 날리고, 남은 돈은 치료비로 탕진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나(癩)관리협회 병원에 입원하였고, 자살하고 싶다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었다. 우리들은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네팔로 떠나 보내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후 지금까지 계속 6개월치씩 약을 보내 주면서 오고 가는 편지들 속에 "한국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한국의 따뜻함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며